

시 훈 특 별 시

Y 100 744 서울 동구 대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58 / 전송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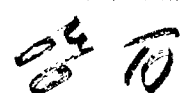
도시계획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14조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및 주민공람공고

지급 번호	시 장
주제 소재지	 법무담당 회계담당 행정담당 기획담당
주제 소재지	
주제 소재지	협조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및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및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및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및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및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도시계획법 제14조 제6항) 및 주민공람공고

1. 예산액 : 청구액 지출

2. 예산회계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수용비 및
인건비)

3. 지출방법 : 공고료 한국언론진흥청 청구에 의거 직분

첨부 1. 공고(안) 1부

2. 도시계획법안도서 1부, 곱.

(제2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신문제재 의뢰

1.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의뢰 하오나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도시계획(도심지개발구역 지정입안 및 공람공고) 홍보

우천시 관내 중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도심지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통보드리오니 각 부서의 의견을 (92.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에 의견보화가 없으시는 해당사항 없음. 것으로 관주 처리하겠습니다.

- 첨부: 1. 공고문 1부.
- 2. 입안도면 1부. 1점.

재 개 발 과 착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제5안)

수신: 기획관리실장

참조: 기획담당관

제목: 지역별 노선 설정

우천시 관내 중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도심지개발구역 지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통보드리오니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으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역별 노선별 노선 설정 1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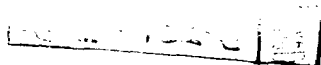
수 개 과 착

(제6안)

수신: 종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도심지

제목: 도시계획(도심지개발 구역지정)입안 및 공람공고)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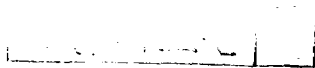
우천시 관내 중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도심지개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는 공람기관 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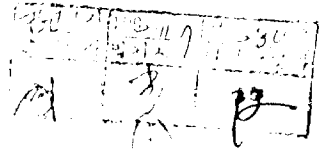


7 1. 공요문 자본 1부,

2. 입안도면 1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 270 호

도시계획(안)(도심재개발 구역지정) 공람공고

1. 우리시 도심지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리요한 이해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공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2. 11.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장 김기철

공람기간 1992. 11. 9 ~ 1992. 11. 16 (14일간)

다. 도시계획(안) 내용

구분	도시계획(안)	공람기간	공람장소	비고
도시계획 사업	도심지재개발구역 지정(대신동구역)	1992. 11. 9 ~ 16 (7일간)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내수동 도심지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2.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상

1. 건명 : 내수동 도심지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2. 제안이유 : 도후원 구 한옥 및 불량건물의 밀집으로 공공시설부족, 주거환경 불양호 등 생활불편과 공공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현상과 조밀한 도시이용과 도시정리의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지역을 도심지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정비료가 저렴한 경작 정취를 회복 시키고

3. 주요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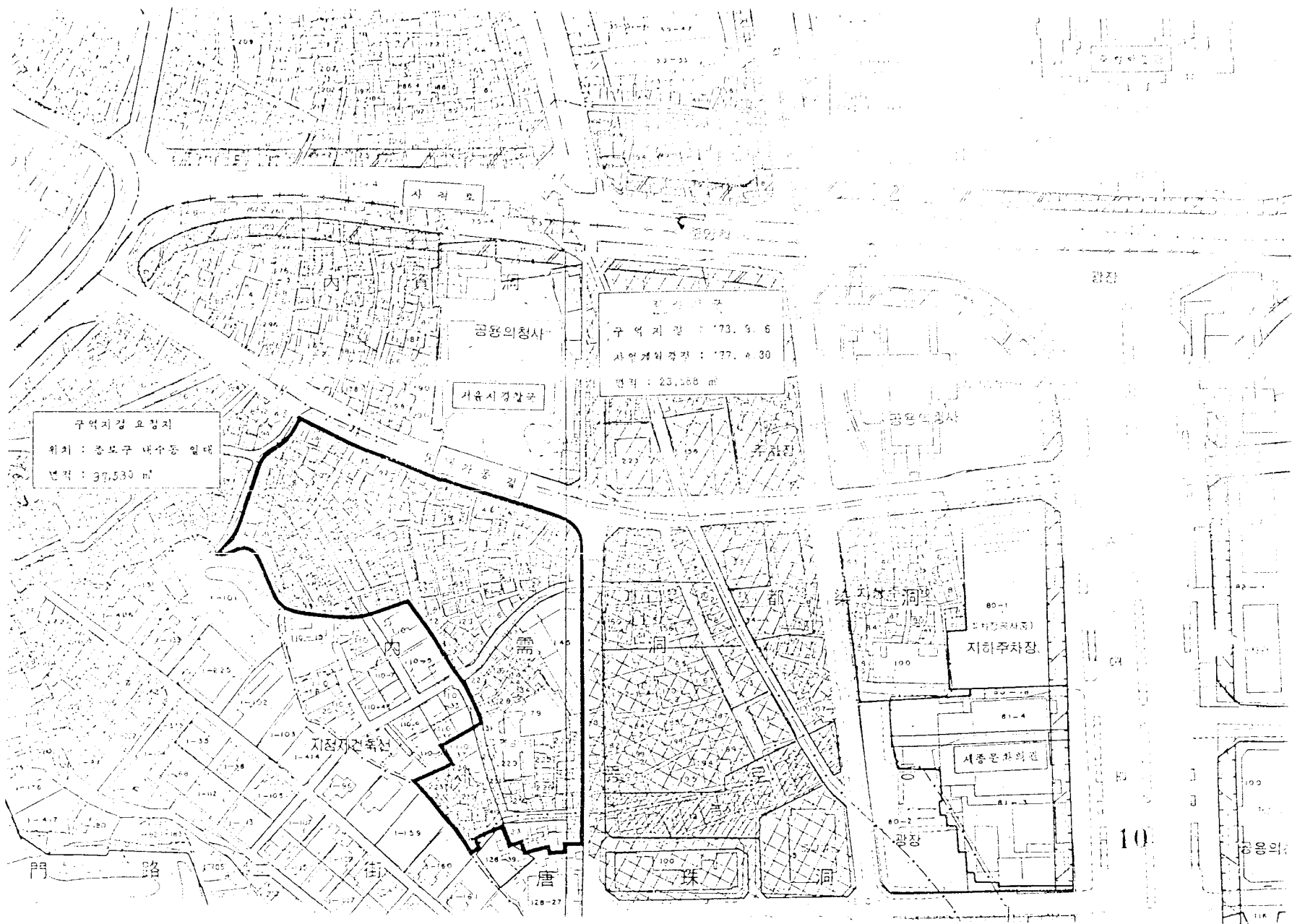
○ 인 구 : 전 인 구 1,200명 (1,200명) (9평)
(1,353명) ○ 전 유 지 : 33,800㎡ (10,743평)

○ 건 축 물 : 263동 (1,200세대) (292세대) (292세대)
○ 전 유 지 : 33,800㎡ (10,743평) (14동)

○ 가 구 수 : 347가구 (1,200세대) (1,200세대)
○ 재 입 자 : 222가구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4. 위 치 : 종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구역지경 요장지
 위치 : 중모구 내수동 일대
 면적 : 37,530 m²

구역지경 : 173.9.6
 사업계획면적 : 177.8.30
 면적 : 23,188 m²

지정지건축선

지하주차장

시중문차의점

都心再開發 區域 指定 指針

国土省 国土政策課



都心再開發 區域 指定 指針	国土省 国土政策課	国土省 都市計画課	1116
----------------	-----------	-----------	------

住 宅 局
(再 開 發 課)

○ 建物現況

- 構架種別 : 鋼骨種 22,270㎡
 - 柱間距 : 10種 2,015㎡ 才造 229棟 11,105㎡
 - 柱間距 : 3種 2,255㎡ 其他 14棟 1,414㎡

○ 建築年限別棟數

- 10年未満 1棟 2,015㎡ 20~30年 83棟
- 30~40年 43棟 50~60年 1棟

3. 整備方針

- 建築時間差 整備方針 : 既存自由建物 整備
- 住居集合 機能 開発 : 隣接地(市界, 積込區域) 商業系務機能의 功衡的 補充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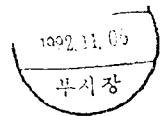
4. その他

- 都市計劃 市界線 通過 : 隣接地, 環境整備 必要
- 本 地 域 의 都 市 計 劃 上 住 居 地 域 : 隣接地와 同一水準의 開發에는 未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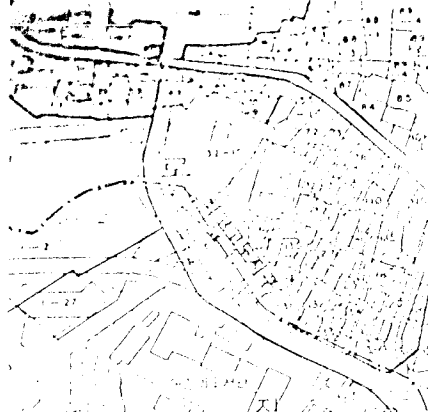
	住居地域	商業地域
- 建築率	50%	50%
- 容積率	<u>400%</u>	<u>670%</u>

5. 161條委 決定 理由 十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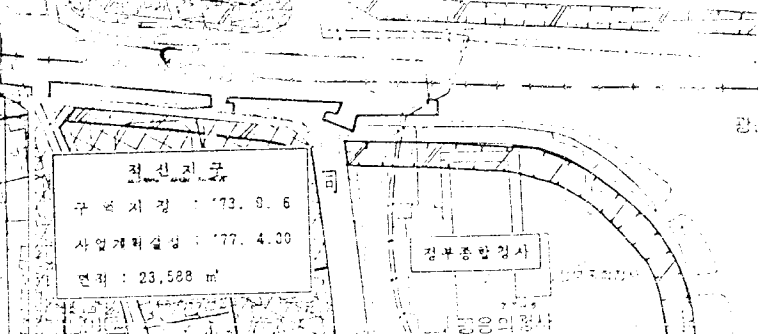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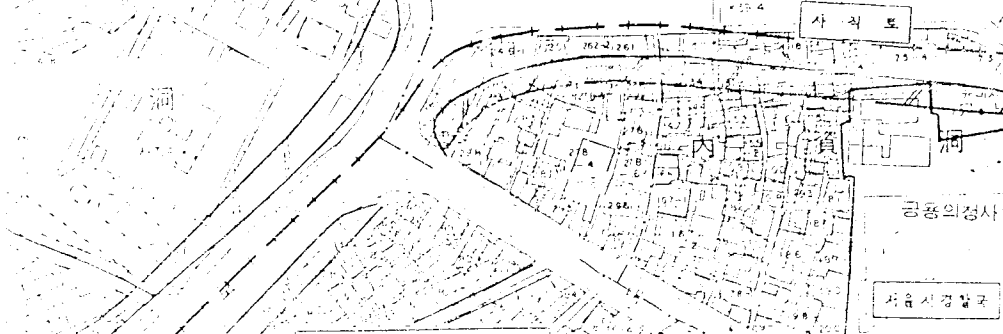
- 住民意見 聴取(供覧公告)
- 市議會 意見 聴取
- 都市計劃委員會 審議
- 區域 指定 要 事業計劃 決定(專門家 用役)



1:110m이상



사척도



구역지정 요양지
 위치 : 종로구 내수동 일대
 면적 : 37,53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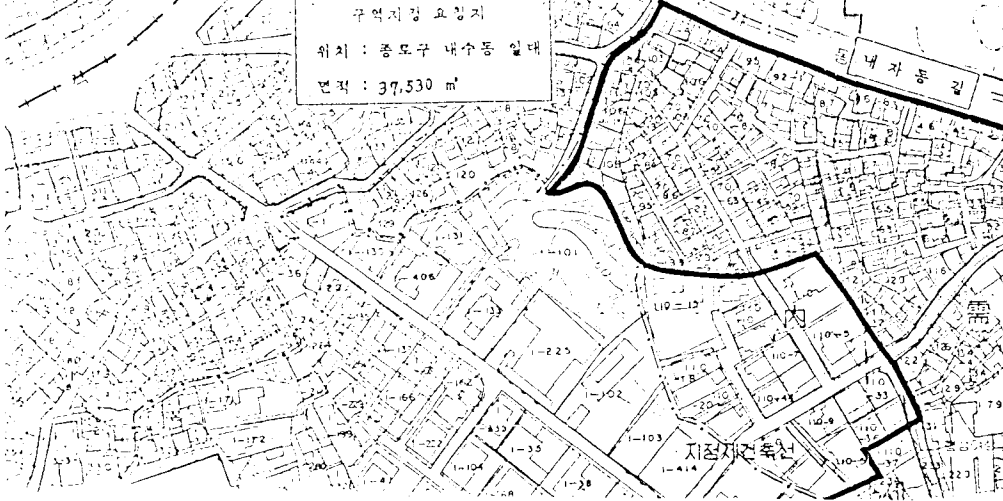
전신지국
 구획지경 : 173.9.6
 사업계획면적 : 177.4.30
 면적 : 23,588 m²

공공의경사

다음시경합국

경부중앙경사

내자동길



지정지점 표시

지하주차장

세종문화회관

1. 재개발구역 지상 조사

지정구분	구획면적	구획의 수	위치 또는 범위	면적(㎡)	비고
전선	37,529.9		동로구 내수동 70번지 일대	37,529.9	328 필지

2. 지역현황조사

1) 현황조사(현황조사)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소유자	세입자
상업	상업	상업	상업	125	222
업무	업무	업무	업무	339	602
주거	주거	주거	주거	23	31
공공	공공	공공	공공	2	2
기타	기타	기타	기타	4	4
합계	합계	합계	합계	21	25
가타	가타	가타	가타	2	2

2)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기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328	37,529.9	18	3,669.5	309	33,691.8	1	168.6
대지	293	33,254.6	8	1,168.2	285	32,086.4		
임야	-							
도로	34	4,106.7	10	2,501.3	24	1,605.4		
구거	-							
가타	1	168.6					1	168.6

3) 도시계획상 보거이용계획

(단위 : m²)

구분	합계	상업지역	일반주거
합계	37,520.9	2,544	34,985.9
기	34,124.9	2,362	33,567.9
주거취락정비지구	4,000.0	2,362	33,567.9
시	1,418	142	1,418
군	1,418	142	1,418

4) 읍·면별, 구·동별 건축현황

(단위 : m²)

구분	층 수 별 (동)					바닥면적		연면적	
	층	1층	2층	3~5층	6층 이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합계	263	229	28	5	1	263	14,236.98	263	22,379.27
군	7	7	2	4	1	7	2,009.8	7	8,366.96
읍·면	14	14	11	1		13	767.4	13	1,492.96
구	246	219	16			223	10,052.76	223	11,104.7
가 (제명포터조)	14	9	5			14	807.02	14	1,414.65

5) 건축물의 건축수명별 연수별 현황

(단위 : m²)

구분	층 수 별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층	2층	3~10층	11층 이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합계	263	229	28	6		263	14,236.98	263	22,379.27
10년 미만	4	2	1	1		4	216.23	4	408.29
10 ~ 20	77	69	6	2		77	4,668.35	77	8,821.91
20 ~ 30	83	70	11	2		83	4,886.8	83	8,174.7
30 ~ 40	48	40	7	1		48	2,359.26	48	2,785.18
40년 이상	51	48	3			51	2,106.34	51	2,189.19

6) 8도별 규모별 건축현황

(단위 : m²)

구분	종류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2층	3~10층	11층이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상주도	주거용	263	0	0	263	14,236.98	263	22,379.27
	상업용	209	0	0	209	10,811.92	209	11,759.46
	근린생활	46	0	0	46	1,578.82	46	2,796.49
	기타	4	2	0	4	1,152.02	4	4,586.63
	합계	522	2	0	522	27,780.74	522	41,522.85
충청도	주거용	1	0	0	1	76	1	181.45
	상업용	1	0	0	1	564.07	1	3,047.34
	근린생활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합계	2	0	0	2	640.74	2	3,228.79	

7) 건축용·상업용·기타

(단위 : m²)

구분	종류	합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상주도	합계	263	22,379.27	263	22,379.27	0	0
	주거용	209	11,759.46	209	11,759.46	0	0
	상업용	4	4,586.63	4	4,586.63	0	0
	근린생활	46	2,796.49	46	2,796.49	0	0
	기타	4	3,312.69	4	3,312.69	0	0
충청도	철골 및 철근	7	8,366.96	7	8,366.96	0	0
	연화 및 석조	13	1,492.96	13	1,492.96	0	0
	목조	229	11,104.7	229	11,104.7	0	0
	기타 (개펄트벽돌부력)	14	1,414.65	14	1,414.65	0	0
합계	263	22,379.27	263	22,379.27	0	0	

8) 최저 고도지구내 건축물 현황

(단위 : m²)

구 분	합 계		고도제한 이상		고도제한 미달	
	동수	바닥면적	동수	바닥면적	동수	바닥면적
합 계	263	14,236.98				
철골 및 철근조	7	2,009.8				
연와 및 석조	13	767.4				
목 조	229	10,652.76				
기 타 (세멘트벽돌벽조)	14	807.02				

9) 방화지구내 건축물 현황

(단위 : m²)

구 분	합 계		방 화 구 조		비 방 화 구 조	
	동수	바닥면적	동수	바닥면적	동수	바닥면적
합 계	263	14,236.98				
철골 및 철근조	7	2,009.8				
연와 및 석조	13	767.4				
목 조	229	10,652.76				
기 타 (세멘트벽돌벽조)	14	807.02				

10) 건축물 내화구조 현황

(단위 : m²)

구 분	합 계		3층 이상 또는 내화구조		내화구조가 아닌 2층 이하	
	동수	바닥면적	동수	바닥면적	동수	바닥면적
합 계	263	14,236.98	34	3,584.22	229	10,652.76
철골 및 철근조	7	2,009.8	7	2,009.8		
연와 및 석조	13	767.4	13	767.4		
목 조	229	10,652.76			229	10,652.76
기 타	14	807.02	14	807.02		

11) 최소 토지등의 현황

(단위 : m²)

구분	합계		최소대지면적 기준미달토지		부적격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73	8,436.5	171	8,441.7	2	54.6
중용선형상(경미)	33	379.5	33	379.5		
기타(경미)	140	8,057.0	138	8,062.2	2	54.6

12) 건축물의 노후·불량등 현황

(단위 : m²)

구분	합계	구조상 불량동수	위생상 불량동수	미관상 불량동수	주거지장 동수
구조 별	합계	263			
	경관 및 철근	7			
	연회 및 석조	13			
	목조	229			
	기타 (세멘트머플브릭조)	14			
노 후 기 간 별	합계	263			
	10년 미만	4			
	10 ~ 20년	77			
	20 ~ 30년	83			
	30 ~ 40년	48			
허 가 별	유 허가	263			
	무 허가	-			